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적용 법률에 대하여 국민과 업무담당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을 정비하고, 국민비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화문서의 활용(안 제5조)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안 제6조)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용어

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다. 민원사항 등의 공표(안 제7조)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사항 등’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 관련 정보 및 법 제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을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정부서비스’로, ‘민원인이’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라.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안 제8조 삭제)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에 대해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마.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안 제9조 삭제)

해당 조문은 민원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때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는 등의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바.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안 제10조 삭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민원담당관과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사. 전자민원처리 수수료(안 제11조 삭제)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안 제12조)

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민원인’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로, ‘민원인등’를 ‘이용자등’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자. 전자적 고지·통지(안 제13조)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각종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 국민비서를 활용하여 전자고지서를 알려주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고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도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함.

차.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안 제14조)

제4호 중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를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로 수정하여 민원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함
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0조)

법 제9조의2에 따른 생활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로 명확히 함에 따라 제1항을 ‘법 제9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수정하고, 전자적 통지가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원인이”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사항 등”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 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를 “법 제14조”로, “그 민원”을 “전자정부서비스”로, “민원인이”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로, ““민원인등””을 ““이용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인등의 신원”을 “이용자등의 신원”으로, “민원인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인등”을 “이용자등”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신자가 전

자문서를 수신하도록 확인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통지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전자문서가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민원처리·입찰”을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입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법 제9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적 고지·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⑦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⑧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⑩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⑪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⑫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5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생략)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u>민원인</u> 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② ----- <u>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u>민원인</u>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① ----- <u>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u>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u>민원사항</u> 등의 신청	제7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 ----- ----- <u>제공하는 전자정부서</u>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 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 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 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스-----
----- 법 제14조-----
----- 전자정부서
비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
-----.

<삭 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앙행정기관등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중앙행정기관등의 세입으로 한다.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

<삭 제>

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①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창구의 단일화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삭 제>

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
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
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전자
민원창구를 통하여 둘 이상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소
관 중앙행정기관등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
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전자
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
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
원사항의 범위와 감면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
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제
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범위에 포함시
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삭 제>

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민원인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민원인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① --

-----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

----- “이용자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용자등의 신원-----

----- 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및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민원인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3조(전자적 고지·통지) ①·

② (생략)

<신 설>

<신 설>

-----.

④ -----

----- 이용자등-----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전자적 고지·통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도록 확인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통지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전자문서가 도달하였는

<신 설>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 3. (생략)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생략)

② (생략)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

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입찰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법 제9조의 2에 따라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⑦ (생 략)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적 고지·통
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2715